

2026년도 안전보건공단 상반기 채용 공고

일하는 모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산업안전보건의 글로벌 리더 안전보건공단에서 함께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.

2026년 2월 20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I 채용 개요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(경력직) 연구직 2급 2명

| 채용분야 | | 배치기관 | 채용인원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2급 | 산업보건(의학) | 연구원(울산) | 2 |

(신입직) 전문직 5급 75명 (일반46명, 지역인재14명, 장애15명)

<세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 상세>

| 채용분야 | | | 계 | 전국채용 | 광주권역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|
| 계 | | | 75 | 57 | 18 |
| 5급 | 산업안전(기계) (24명) | 일반 | 15 | 10 | 5 |
| | | 지역인재 | 5 | 5 | 0 |
| | | 장애 | 4 | 3 | 1 |
| | 산업안전(전기) (10명) | 일반 | 5 | 4 | 1 |
| | | 지역인재 | 2 | 2 | 0 |
| | | 장애 | 3 | 2 | 1 |
| | 산업안전(화공) (15명) | 일반 | 9 | 6 | 3 |
| | | 지역인재 | 3 | 3 | 0 |
| | | 장애 | 3 | 3 | 0 |
| | 산업보건(환경) (4명) | 일반 | 3 | 2 | 1 |
| | | 지역인재 | 0 | 0 | 0 |
| | | 장애 | 1 | 1 | 0 |
| | 건설안전(건축) (15명) | 일반 | 9 | 7 | 2 |
| | | 지역인재 | 4 | 4 | 0 |
| | | 장애 | 2 | 1 | 1 |
| | 건설안전(토목) (7명) | 일반 | 5 | 3 | 2 |
| | | 지역인재 | 0 | 0 | 0 |
| | | 장애 | 2 | 1 | 1 |

❖ **참고사항**

- ✓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, 채용분야별·모집권역별 **중복지원 불가**
- ✓ **(전국채용)**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,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음
- ✓ **(광주권역)** 해당 권역에서 **만 10년 이상 의무근무**
(단, 만 5년 경과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'본부' 근무를 명할 수 있음)

2. 근무 조건

(신 분) 정규직

※ 공단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, 수습기간 동안 보수 등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

(보 수) 공단 「보수규정」에 따름

※ 경력기간 등에 따른 호봉획정은 추후 필요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산정 예정이며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보수 담당 부서(경영지원실 경영노사협력부)로 문의(☎ 052-703-0548, 0546)

(근무장소) 지원자 필수 확인사항

- (전국채용)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실시
- (광주권역) 지원한 권역에서 만 10년 이상 의무근무* 실시

*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정규직 임용시점으로부터 만 10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 인사일정에 맞추어 전국 순환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단, 만 5년 경과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'본부' 근무를 명할 수 있음)

| 모집 권역 | 근무예정기관(소재지) |
|-------|---|
| 전국채용 | 본부 및 전국 산하기관 |
| 광주권역 | 광주광역시본부(광주), 전북지역본부(전주), 전남지역본부(무안), 제주지역본부(제주), 전북서부지사(군산), 전남동부지사(여수) |

3. 지원 자격요건

공통 자격요건

-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8조의 결격사유(참고자료1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(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-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□ 분야별 자격요건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 ※ 지원자격 해당여부는 **접수마감일** 기준으로 판단

○ 경력직(연구직 2급-산업보건(의학)) 아래 지원자격 모두 충족

| | |
|------|---|
| 학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련전공* 학사 학위 이상 * 관련전공 키워드: 의학 ☞ 학과명(전공명)에 상기 키워드가 포함되는 학과(전공) 및 이에 준하는 학과(전공) |
| 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사 면허 ▶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 |
| 경력 | ▶ 경력 무관 |
| 핵심직무 | ▶ 직업건강연구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수행 |

○ 신입직

| 구분 | | 지원 자격요건 |
|----|------|---|
| 5급 | 일반 | ▶ 학력, 전공, 성별 및 연령 등 제한 없음 |
| | 지역인재 | ▶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(부산제외)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※ (참고자료2) 국토교통부 예규 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 |
| | 장애 | ▶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|

4. 우대사항

※ 모든 우대사항 적용은 **접수마감일** 기준으로 해당여부 판단

| 구분* | 적용대상 및 우대사항 |
|-----------------|---|
| 사회 형평적 인력 | <p>취업지원 대상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※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※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고,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(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) ☞ 서류·필기·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 부여 |
| | <p>장애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☞ 필기전형 만점의 3%(경증) 또는 5%(중증*) 가점 부여 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|

| 구 분* | | 적용대상 및 우대사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회 형평적 인력 (계속) 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※ 접수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☞ 필기전형 만점의 3% 가점 부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한부모 가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※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☞ 필기전형 만점의 3% 가점 부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북한이탈주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※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☞ 필기전형 만점의 3% 가점 부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다문화가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※ 접수마감일 기준,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☞ 필기전형 만점의 3% 가점 부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자립준비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자립준비청년 ※ 접수마감일 기준, 동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☞ 필기전형 만점의 3% 가점 부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직무 관련 | '25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5년도 안전보건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☞ 필기전형 만점의 1·3·5·10% 부여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6개월 근무 +우수인턴</th> <th>6개월 근무</th> <th>3개월 이상~ 6개월 미만 근무</th> <th>3개월 미만 근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점</td> <td>만점의 10%</td> <td>만점의 5%</td> <td>만점의 3%</td> <td>만점의 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구분 | 6개월 근무 +우수인턴 | 6개월 근무 | 3개월 이상~ 6개월 미만 근무 | 3개월 미만 근무 | 가점 | 만점의 10% | 만점의 5% | 만점의 3% | 만점의 1% |
| 구분 | 6개월 근무 +우수인턴 | 6개월 근무 | 3개월 이상~ 6개월 미만 근무 | 3개월 미만 근무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점 | 만점의 10% | 만점의 5% | 만점의 3% | 만점의 1% | | | | | | | |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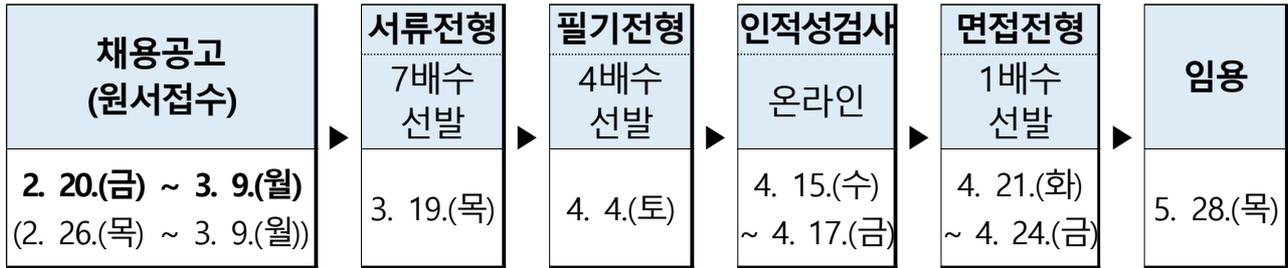
* 취업지원대상자는 2급·5급 공통 적용, 그 외 우대사항은 5급에만 적용

(중복적용 불가) 동일 전형에서 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
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, 직무 관련 가점(체험형 인턴)과 중복하여 적용가능

(우대사항 예외) 각 전형별 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(원점수 기준)는 우대사항 가점 미부여

II 채용절차 및 일정



- ※ 2급 채용의 경우 직무특성 및 자격요건을 통한 검증 등을 고려하여 필기전형 및 인적성검사 생략
- ※ 채용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공단 채용사이트에 공지 예정

1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2. 26.(목) 10:00 ~ 3. 9.(월) 11:00
- 접수방법 : 안전보건공단 채용사이트*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접수
 * <https://kosha.career.co.kr>
- 접수내용 : 직무능력기반 지원서, 직무수행계획서,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
 ※ (참고자료3) 직무수행계획서 문항 (참고자료4) 교육이수현황 작성 관련 세부사항 참조

☑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❖ 채용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**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** 최종제출이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❖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가능하며, **동일분야 또는 타 분야 중복지원 시**에는 지원서 전체를 '부적격' 처리합니다.
- ❖ 지원자격 충족 및 우대사항 해당여부는 **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** 판단합니다.
- ❖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, 누락,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특히 취업지원대상자 및 기타 우대사항 해당자 등의 가점적용의 경우,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❖ 입사지원서 **불성실 기재자**(무의미한 단어나열, 타 기업 지원 등) 및 **허위 기재자**는 **감점 또는 부적격** 처리됩니다.
- ❖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**직무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**(예: 성별, 연령, 사진, 신체조건, 학교명, 출신 지역, 종교, 혼인여부, 가족관계 등)을 작성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❖ 입사지원서의 **성명, 출생월일을 정확히 작성**해주시기 바랍니다. 각 채용 전형에서 입사지원서의 성명 및 출생월일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, **본인 확인 불가로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❖ 증빙서류 등록 시에는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스캔본을 등록**하고 향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❖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해당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, 편견요소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❖ 모든 증빙서류는 해당정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낮은 해상도 또는 첨부파일 오류(파일손상) 등의 사유로 **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**
- ❖ 최종 제출 완료 후에는 **지원서 수정이 불가**하니 제출 전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<(2급) 제출 서류>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
| 채용 분야 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일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
| 2급 | 산업보건 (의학) | 지원 자격 | ① 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증명서(보건복지부 면허민원) ② 관련 분야 전문의*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** *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**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③ 관련 분야 학위*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(국문) ※ 학위(학사 이상) 및 전공명 표기 필수 * 학과명(전공명)에 '의학' 키워드가 포함되는 학과(전공) 및 이에 준하는 학과(전공) | 제한 없음 |

<(5급) 제출 서류>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
| 채용 분야 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일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5급 | 지역인재 |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(국문) | 제한없음 |
| | 장애 | 경증 : 장애인증명서 / 중증 : 중증장애인확인서 | 공고시작일 (2. 20)이후 |
| 공통 (해당자만) | 정량 평가 사항 | (직무기술 자격증 소지자) 정량평가 세부기준의 '직무 기술자격' 항목에 기재된 사항 증빙서류 | 최종임용시 제출 |
| | | (공인어학 성적 소지자) 정량평가 세부기준의 '공인 어학' 항목에 기재된 사항 증빙서류 | |
| | | (사무자동화 자격증 소지자) 정량평가 세부기준의 '사무자동화' 항목에 기재된 사항 증빙서류 | |
| | | (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) 정량평가 세부기준의 '한국사능력' 항목에 기재된 사항 증빙서류 | |
| | 우대 사항 |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 최종임용시 제출 |
| | | (장애인) 경증 : 장애인증명서 / 중증 : 중증장애인확인서 | |
| | | (국민기초생활수급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공고시작일 (2. 20)이후 |
| | |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| | |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|
| | | (다문화가족)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사실증명서 (본인이 직계자녀일 경우, 외국인 출신 부모명의 서류 제출) | |
| (자립준비청년)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| 제한없음 | | |
| (25년도 안전보건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) 25년 공단 체험형 인턴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| | | |
| 기타 | (개명한 자) 주민등록초본(개명사항 포함) | 공고시작일 (2. 20)이후 | |

※ 입사지원 시 지원자격,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
- 단, ①직무기술 자격증 소지자, ②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③사무자동화 자격증 소지자, ④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, ⑤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, 최종 임용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사지원서류 상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조회결과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함

2. 서류전형

□ 심사일정 : 2026. 3. 19.(목)

□ 심사항목 : 지원자격 및 채용분야별 접수 서류 일체

※ (공통) 지원자격(경력직, 지역인재, 장애) 충족여부 및 블라인드 위배, 불성실 기재를 바탕으로 적격/부적격 판단

√ **부적격 판단 기준** (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)

- 블라인드 위배 1건 이상
 - 직무수행계획서에 본인 성명, 성별, 연령, 신체조건, 출신 학교명, 출신지역, 종교, 혼인여부, 가족관계 등 기입
- 중대결함 1건 이상
 - 직무수행계획서 항목별 글자 수 20% 미만 기입
 - 반복 단어(의미없는 문자, 숫자등을 나열한 경우)
 - 반복 문항(복수 문항에 동일답변 반복)
- 의심결함 3건 이상
 - 반복 문장(동일 문항 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한 경우)
 - 타기업 지원(타 기관의 명칭으로 잘못 기입한 경우), 자사명 오기재(ex보건안전공단 등)
 - 비속어(비어, 속어를 사용한 경우)

상기 열거한 항목은 검출 시 부적격 사유가 되며 그 외 심사과정에서 직무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※ (5급) 적격자에 한해 직무기술자격, 공인어학, 사무자동화, 한국사능력 정량평가

* (참고자료5-1) 5급 정량평가 기준 참조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
□ 합격자 발표 및 안내 : 2026. 3. 24.(화) 17:00 이후(예정)

※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

3. 필기전형[신입직]

□ 심사일정 : 2026. 4. 4.(토) 14:00 ~ 15:00(60분)

□ 심사장소 : 충청권 소재 고사장(예정)

※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심사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

□ 평가항목 : 직무수행능력평가(직무지식),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

□ 출제 문항

○ 5급(일반, 지역인재) : 50문항, 1과목(직무수행능력평가^{70%}+직업기초능력평가^{30%})

○ 5급(장애) : 50문항, 1과목(직업기초능력평가^{100%})

※ 필기시험 점수가 40점(만점의 40%) 미만 시 불합격 처리

<신입직 5급(일반,지역인재) 필기시험 세부내용>

| 반영 비율 | 평가 항목 | 세부 평가내용 | | 문항 | 점수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| | | 50문항 | 100점 |
| 70% | 직무수행 능력평가 | 산업안전 (기계) | 일반기계기사 수준 (기계제도 및 설계, 기계재료 및 제작, 구조해석, 열유체 해석) | 35문항 | 70점 |
| | | 산업안전 (전기) | 전기기사 수준 (전기자기학, 전력공학, 전기기기,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, 전기설비기술기준) | | |
| | | 산업안전 (화공) | 화공기사 수준 (공업합성, 단위공정관리, 반응운전, 화공계측제어) | | |
| | | 산업보건 (환경) | 대기환경기사 수준 (대기환경관리, 연소공학, 대기오염방지기술,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) | | |
| | | 건설안전 (건축) | 건축기사 수준 (건축계획, 건축시공, 건축구조, 건축설비, 건축관계법규) | | |
| | | 건설안전 (토목) | 토목기사 수준 (응용역학, 측량학, 수리학 및 수문학,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, 토질 및 기초, 상하수도공학) | | |
| 30% | 직업기초 능력평가 |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조직이해능력, 대인관계능력, 수리능력 | | 15문항 | 30점 |

<신입직 5급(장애) 필기시험 세부내용>

| 반영 비율 | 평가 항목 | 세부 평가내용 | 문항 | 점수 |
|-------|-----------|--|------|------|
| 100% | 직업기초 능력평가 |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조직이해능력, 대인관계능력, 수리능력 | 50문항 | 100점 |

합격자 발표 : 2026. 4. 15.(수) ※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

4. 인적성검사(온라인)^[신입직]

검사대상 : 필기전형 합격자 전체

검사기간 :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'26. 4. 15.(수) ~ 4. 17.(금) 13:00, 3일간

※ 기한 내 인적성검사 미완료자는 **면접응시 포기**로 간주되어 **면접참여 불가** 지원자 필수 확인사항

검사내용 :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, 가치관, 공직윤리 등

검사방법 :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(채용사이트 내 연동 예정)

※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

5. 면접 전형

심사일정 : '26. 4. 21.(화) ~ 4. 24.(금)

심사장소 : 면접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심사항목 : 직무역량 및 가치적합성 평가

<신입직 면접전형 세부내용>

| 구분 | 평가내용 | 심사방식* | | 방식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직무역량평가 | 직무 관련 이론 및 실무역량, 전문성 등 | 직무토론 | 특정 주제에 대한 찬/반 토론 또는 토의 등 | 다 대 다 |
| | | 질의 응답 | 전공별 최근 이슈, 직무 이론, 직무 경험 등 | |
| 가치적합성평가 | 정신자세, 인재상, 공직윤리, 발전가능성 | 질의 응답 |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인성, 경험 등 | |

*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세부내용 안내 예정

6. 합격자 발표 및 등록

□ (합격자 발표) 2026. 5. 6.(수) 17:00 이후

※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

□ (최종합격자 등록) 2026. 5. 6.(수) ~ 5. 8.(금)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
☑ 합격자 등록 유의사항

- ❖ **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**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**합격이 취소**됩니다.
- ❖ **임용포기를 원할 경우, 임용포기확인서를 작성·스캔하여 합격자 등록페이지에 업로드**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❖ 임용포기확인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 기회가 부여됩니다.
 - 입사일정 및 장소가 사전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임용포기확인서 또는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경우
 -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용포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,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경우
- ❖ 임용포기자 또는 조기면직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유선 연락하여 추가합격을 진행하며, **추가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맞추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(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)**

7. 임용

□ 임용일자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
○ (정규직 임용) 2026. 5. 28.(목)

※ 정규직 임용 후 수습기간 3개월

※ 임용서류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☑ 임용 유의사항

- ❖ 합격자는 **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**
- ❖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(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)을 제출하여야 하며,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❖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**합격자 기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, 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- ❖ 채용완료 후, **임용 결격사유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**됩니다.

Ⅲ 기타 안내사항

- 우리 공단은 전국 순환근무가 원칙이며,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 - (전국채용) 정규직 임용시점부터 전국 순환근무 실시
 - (광주권역) 의무 근무기간 종료 후 전국 순환근무 실시
- 기본적으로 숙소 등 정주여건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**지원자 필수 확인사항**
-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접수마감 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처리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자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,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- 공단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준수합니다.
-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
 - 부정한 방법(청탁, 압력 등)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
 -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
-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절차의 중지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-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선발·운영합니다.
 - 예비합격자는 모집단위별로 5명 이내에서 선정·운영합니다.
-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공고 내용은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,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공단 내규의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. ※ (참고자료6)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기준 참고
- 불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간(주말·공휴일 제외)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(별지1)를 작성하여 이메일(recruit@kosha.or.kr)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 - 시험출제자, 심사위원 개인정보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-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, 정보 요구 등
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증빙서류는 지원자격·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, 정해진 기간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서류 확인결과 허위 기재 사실 확인 시 불합격처리합니다.
 -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스캔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추후 최종합격자에 대해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
-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

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, 위반 시 법 제3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7조2에 따라 전형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은 유형별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(참고자료7)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

- 합격자가 만 18세 미만 연소자인 경우, 관련법령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있어야 최종 임용이 가능합니다.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으며(별지2 참고), 기한이 지나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
※ 단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불합격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 평정표는 채용서류에 준하여 영구보존

-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채용사이트의 공지사항, FAQ 및 Qn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채용관련 문의사항 : 02-2006-9525, 02-2006-9572 및 채용사이트 '채용문의'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경력직 | 2급 | 산업보건(의학) | 공고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울산* | 2명 |

*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가능(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단 「직원 복무 처리지침」에 따름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단사업 | <p>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</p>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직업건강연구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수행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의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적 조사 및 업무관련성평가 수행 ▸ 기존 직업성질환과 새로운 원인에 의한 신종 직업성질환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건강연구 계획 수립 및 수행 ▸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 지도 ▸ 신규 및 기존 유해인자의 검사방법, 건강진단 실시방법 개정 등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직업환경의학 및 직업역학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 ▸ 직업환경 및 직업의학 분야 문헌 조사 및 활용능력 ▸ 직업환경 및 직업의학 분야 통계 자료 분석능력 ▸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▸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▸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▸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**지원가능** 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지원 자 격 | 학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관련전공* 학사 학위 이상 * 관련전공 키워드: 의학 ☞ 학과명(전공명)에 상기 키워드가 포함되는 학과(전공) 및 이에 준하는 학과(전공) |
| | 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의사 면허 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 |
| | 경력 | ▸ 경력 무관 |
| 증빙서류 | 학위 |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(국문) ※ 학위 및 전공명 표기 필수 |
| | 자격 | (아래 ①, ② 모두 제출) ① 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증명서(보건복지부 면허민원) ② 관련 분야 전문의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(보건복지부 면허민원) |
| | 경력 | - |
| 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| | |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신입직 | 5급 | 산업안전(기계) | 공고 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(전국채용) 전국 순환 (광주권역) 채용권역 내 | 공고 참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단사업 |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기술지원, 심사, 교육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사업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국 중상해,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▶ 유해·위험기계에 대하여 설계·제조·설치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현장확인 지원 ▶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▶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경영시스템, 민간·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, 중대재해조사, 진단 등 재해예방 활동 수행 ▶ 사고조사, 실태조사, 데이터 분석,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등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주요) 고체·유체·열역학, 기계재료, 기계설계, 유공압,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기계설비, 화학플랜트, 전기·전자기기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▶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▶ (일반)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▶ (일반) 제조서비스업 등 사업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, 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의 도출 및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▶ (일반)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·확인, 안전인증·안전검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▶ (일반) 국제협력 교류, 국제안전보건동향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▶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▶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▶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▶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▶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 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 자격 | 학위 | ▸ 학위 무관 | |
| | 자격 | ▸ 자격 무관 | |
| | 경력 | ▸ 경력 무관 | |
| | 기타 | 장애 | ▸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|
| 지역인재 | | ▸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(부산 제외)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※ 대학원, 사이버대학, 평생교육기관, 독학학위 취득자, 학점인정학위 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 | |
| 증빙서류 | 장애 | ▸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 | |
| | 지역인재 | ▸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| |
| 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| | | |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신입직 | 5급 | 산업안전(전기) | 공고 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(전국채용) 전국 순환 (광주권역) 채용권역 내 | 공고 참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공단사업 |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기술지원, 심사, 교육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사업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국 중상해,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▶ 유해·위험기계체에 대하여 설계·제조·설치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현장확인 지원 ▶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▶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경영시스템, 민간·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, 중대재해조사, 진단 등 재해예방 활동 수행 ▶ 사고조사, 실태조사, 데이터 분석,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등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주요) 회로이론, 전자기학, 전력공학, 전기기기, 제어계측 등 전기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전기안전, 기계안전, 화공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전기·전자기기, 기계설비, 화학플랜트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▶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▶ (일반)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▶ (일반) 제조서비스업 등 사업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, 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의 도출 및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▶ (일반)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·확인, 안전인증·안전검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▶ (일반) 국제협력 교류, 국제안전보건동향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▶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▶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▶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▶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▶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 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 자격 | 학위 | ▸ 학위 무관 | |
| | 자격 | ▸ 자격 무관 | |
| | 경력 | ▸ 경력 무관 | |
| | 기타 | 장애 | ▸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|
| 지역인재 | | ▸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(부산 제외)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※ 대학원, 사이버대학, 평생교육기관, 독학학위 취득자, 학점인정학위 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 | |
| 증빙서류 | 장애 | ▸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 | |
| | 지역인재 | ▸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| |
| 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| | | |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신입직 | 5급 | 산업안전(화공) | 공고 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(전국채용) 전국 순환 (광주권역) 채용권역 내 | 공고 참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단사업 |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기술지원, 심사, 교육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사업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국 중상해,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▶ 유해·위험기계에 대하여 설계·제조·설치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현장확인 지원 ▶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▶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경영시스템, 민간·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, 중대재해조사, 진단 등 재해예방 활동 수행 ▶ 사고조사, 실태조사, 데이터 분석,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등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주요) 유체·열역학, 화학공학, 석유화학, 고분자, 반응공학 등 화공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화공안전, 기계안전, 전기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화학플랜트, 기계설비, 전기·전자기기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▶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▶ (일반)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▶ (일반) 제조서비스업 등 사업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, 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의 도출 및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▶ (일반)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·확인, 안전인증·안전검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▶ (일반) 국제협력 교류, 국제안전보건동향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▶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▶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▶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▶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▶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 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 자격 | 학위 | ▸ 학위 무관 | |
| | 자격 | ▸ 자격 무관 | |
| | 경력 | ▸ 경력 무관 | |
| | 기타 | 장애 | ▸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|
| 지역인재 | | ▸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(부산 제외)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※ 대학원, 사이버대학, 평생교육기관, 독학학위 취득자, 학점인정학위 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 | |
| 증빙서류 | 장애 | ▸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 | |
| | 지역인재 | ▸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| |
| 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| | | |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신입직 | 5급 | 산업보건(환경) | 공고 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(전국채용) 전국 순환 (광주권역) 채용권역 내 | 공고 참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단사업 |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속적이고 건강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보건 분야 기술지원, 유해작업환경개선 지원, 심사, 교육 등 노동자 업무상질병 및 직업병 예방사업 수행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물질,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비용지원 및 기술지원 과로,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등 노동자 건강보호·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개선지원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장 재정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, 보건관련 민간기관 평가, 중대재해조사, 사업장 보건진단 수행 독성실험, 역학조사, 실태조사, 측정 및 분석, 산업보건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산업보건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, 미디어 개발·보급,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주요) 산업환경, 산업위생, 인간공학, 건강관리 및 증진 등 산업보건, 독성, 화학, 산업간호 관련분야 전공에 대한 지식 (주요)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·분석·평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(주요) 산업환기시설 설계 및 성능검사에 관한 지식 및 기술 (주요) 과로,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식 및 기술 (주요) 석면·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이상기압에 대한 지식 (주요) 화학물질 기기분석 이론에 관한 지식 및 활용 능력 (주요) 밀폐공간 구분 능력 및 질식재해 예방대책 제시 능력 (일반)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작성 및 적용에 대한 지식 (일반) 폭염,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지식 (일반) 사업장 유해작업환경관리 기술 및 노출수준 저감 대책 제시 능력 (일반) 소음·진동 방지시설 설계 및 측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**지원가능**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 자격 | 학위 | ▸ 학위 무관 | |
| | 자격 | ▸ 자격 무관 | |
| | 경력 | ▸ 경력 무관 | |
| | 기타 | 장애 | ▸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|
| 증빙서류 | 장애 | ▸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 | |

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신입직 | 5급 | 건설안전(건축) | 공고 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(전국채용) 전국 순환 (광주권역) 채용권역 내 | 공고 참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공단사업 |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분야 기술지도, 안전점검, 심사지원 및 확인, 컨설팅, 교육지원, 재해원인조사 및 분석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 사업 수행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중상해, 사고 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·점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이 취약한 중·소 종합(전문)건설업체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컨설팅 지원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건설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 안전시설 비용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지원·확인, 중대재해 원인조사, 진단 등 재해예방활동 수행 위험성평가, KOSHA-MS, 민간·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·사망만인율 산정 및 재해예방 실적평가 수행 민간기술지도기관(건설업) 선정·관리·평가 및 안전한 일터지킴이 운영·관리 등 건설 연구과제, 사고조사, 실태조사, 데이터 분석,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건설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, 미디어 개발·보급,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유해·위험 기계 및 비계·동바리 등 가설재의 설계·설치·해체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확인 지원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주요) 건축공사 작업 안전 관련분야, 주요 공정 및 공법 등의 공학적 지식 (주요) 건축공사 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(일반)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 도출과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현장점검·기술지도 수행 능력 (일반) 건축공정·안전보건정보 이해와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술 및 교육할 수 있는 지식·소통 능력 (일반)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능력 (일반)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최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 (일반) 국제협력 교류, 국제안전보건 동향 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처리능력, 기술능력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및 현장 대응력 산재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·윤리의식 및 공정성, 공공조직 이해도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
|---|------|---|
| 지원 자격 | 학위 | 학위 무관 |
| | 자격 | 자격 무관 |
| | 경력 | 경력 무관 |
| | 기타 | <p>장애 ▶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</p> <p>지역인재 ▶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(부산 제외)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※ 대학원, 사이버대학, 평생교육기관, 독학학위 취득자, 학점인정학위 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</p> |
| 증빙서류 | 장애 | ▶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 |
| | 지역인재 | ▶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|
| <p>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</p> | | |

직무설명서

| 구분 | 채용분야 | | | 근무조건 | | 채용 인원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급 | 직무분야 | 채용권역 | 근무형태 | 근무지 | |
| 신입직 | 5급 | 건설안전(토목) | 공고 참조 | 전일제 (주 40시간) | (전국채용) 전국 순환 (광주권역) 채용권역 내 | 공고 참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단사업 |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|
| 핵심직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분야 기술지도, 안전점검, 심사지원 및 확인, 컨설팅, 교육지원, 재해원인조사 및 분석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 사업 수행 |
| 수행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국 중상해, 사고 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·점검 ▶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이 취약한 중·소 종합(전문)건설업체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컨설팅 지원 ▶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건설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 안전시설 비용지원 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지원·확인, 중대재해 원인조사, 진단 등 재해예방활동 수행 ▶ 위험성평가, KOSHA-MS, 민간·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▶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·사망만인율 산정 및 재해예방 실적평가 수행 ▶ 민간기술지도기관(건설업) 선정·관리·평가 및 안전한 일터지킴이 운영·관리 등 ▶ 건설 연구과제, 사고조사, 실태조사, 데이터 분석,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▶ 건설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, 미디어 개발·보급,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▶ 유해·위험 기계 및 비계·동바리 등 가설재의 설계·설치·해체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확인 지원 |
| 필요지식 및 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주요) 토목공사(교량, 터널, 철도, 도로 등) 작업 안전 관련분야, 주요 공정 및 공법 등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토목공사 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▶ (일반)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 도출과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현장점검·기술지도 수행 능력 ▶ (일반) 토목공정·안전보건정보 이해와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술 및 교육할 수 있는 지식·소통 능력 ▶ (일반)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▶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능력 ▶ (일반)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최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 ▶ (일반) 국제협력 교류, 국제안전보건 동향 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▶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|
| 필요역량 및 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▶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처리능력, 기술능력 ▶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▶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및 현장 대응력 ▶ 산재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·윤리의식 및 공정성, 공공조직 이해도 등 |

(지원자격)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 원 자 격 | 학위 | ▸ 학위 무관 | |
| | 자격 | ▸ 자격 무관 | |
| | 경력 | ▸ 경력 무관 | |
| | 기타 | 장애 | ▸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|
| 증빙서류 | 장애 | ▸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 | |

(우대사항)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

【참고자료 1】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8조(결격사유)

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8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6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7.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,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1.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【참고자료 2】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

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

□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(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(부산 제외))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 - 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지원서 접수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.

□ 이전 지역인재 학교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(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(부산 제외))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 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- ※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※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※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 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 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
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 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-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□ 이전 지역인재

- 이전 지역(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(부산 제외))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-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 - ㉠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 - 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 - 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 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 - 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- ① 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
 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 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 - ※ 부산대 분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- ②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
 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: 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: 해당
- ③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
 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: 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-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
 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 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- ⑤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- ⑥ 경찰대학 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
 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해당
 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비해당
- ⑦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 - 이전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해당
 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비해당

【참고자료 3】 직무수행계획서 문항

직무수행계획서

- ❖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(예: 성별, 연령, 사진, 신체조건, 학교명, 출신지역, 종교, 혼인여부, 가족관계 등)을 작성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❖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(무의미한 단어나열, 타 기업 지원 등) 및 허위기재자는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.

1. 본인이 응시한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한 직무능력, 본인이 보유한 직무능력과 이를 공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1,400자 이내)

2. 우리 공단의 사업 중 관심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, 해당 사업에 관한 본인의 생각(필요성, 개선사항 등)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1,400자 이내)

3. 공단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 세 가지와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. (1,400자 이내)

【참고자료 4】 교육이수현황 작성 관련 세부사항

교육이수현황 작성 관련 세부사항

- 직무설명서 상 채용분야별 필요지식 및 기술 중 “주요” 필요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이수현황을 작성(접수마감일 기준, 이수가 완료된 교육에 한하여 작성)
 - 학교교육 : “주요” 필요지식 및 기술 관련 정규 학교교육 이수사항(학기별)
 - 직업교육 : “주요” 필요지식 및 기술 관련 고용노동부 HRD-Net 등록 과정으로 한정

(5급)

| 채용분야 | 주요 필요지식 및 기술 |
|----------|---|
| 산업안전(기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체·유체·열역학, 기계재료, 기계설계, 유공압,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건설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기계설비, 화학플랜트, 전기·전자기기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|
| 산업안전(전기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회로이론, 전자기학, 전력공학, 전기기기, 제어계측 등 전기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건설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기계설비, 화학플랜트, 전기·전자기기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|
| 산업안전(화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유체·열역학, 화학공학, 석유화학, 고분자, 반응공학 등 화공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건설안전,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▶ 기계설비, 화학플랜트, 전기·전자기기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|
| 산업보건(환경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환경, 산업위생, 인간공학, 건강관리 및 증진 등 산업보건, 독성, 화학, 산업간호 관련분야 전공에 대한 지식 ▶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·분석·평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▶ 산업환기시설 설계 및 성능검사에 관한 지식 및 기술 ▶ 과로,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식 및 기술 ▶ 석면·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이상기압에 대한 지식 ▶ 화학물질 기기분석 이론에 관한 지식 및 활용 능력 ▶ 밀폐공간 구분 능력 및 질식재해 예방대책 제시 능력 |
| 건설안전(건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축공사 작업 안전 관련분야, 주요 공정 및 공법 등의 공학적 지식 ▶ 건축공사 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|
| 건설안전(토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토목공사(교량, 터널, 철도, 도로 등) 작업 안전 관련분야, 주요 공정 및 공법 등의 공학적 지식 ▶ 토목공사 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|

【참고자료 5-1】 5급 정량평가 기준

<5급 정량평가 기준>

| 평가항목 (배점) | 채용분야 | 점수 | 내용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|---|
| 직무기술자격 (50) | 산업안전(기계) | 50 | 기술사 | 기계, 건설기계, 공조냉동기계, 산업기계설비, 조선, 금형, 금속가공, 금속재료, 금속제련, 용접, 표면처리, 산업계측제어, 기계안전, 소방 |
| | | 35 | 기능장 | 기계가공, 금형제작, 금속재료, 압연, 제강, 제선, 판금제관, 주조, 용접, 표면처리 |
| | | 13 | 기사 | 산업안전, 일반기계, 건설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조선선체, 조선의장, 사출금형, 프레스금형, 금속재료, 용접, 로봇기구개발, 로봇소프트웨어개발, 로봇하드웨어개발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승강기 |
| | | 4 | 산업기사 | 산업안전, 기계조립, 기계설계, 건설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, 조선, 사출금형, 프레스금형, 금속재료, 판금제관, 주조, 용접, 표면처리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승강기 |
| | 산업안전(전기) | 50 | 기술사 | 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용, 소방, 전기안전 |
| | | 35 | 기능장 | 전기, 전자 |
| | | 13 | 기사 | 산업안전, 전기, 전기공사, 전자, 소방설비(전기분야) |
| | | 4 | 산업기사 | 산업안전, 전기, 전기공사, 전자, 소방설비(전기분야) |
| | 산업안전(화공) | 50 | 기술사 | 화공, 가스, 소방, 화공안전, 폐기물처리 |
| | | 35 | 기능장 | 위험물, 가스 |
| | | 13 | 기사 | 산업안전, 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가스, 폐기물처리, 환경위해관리 |
| | | 4 | 산업기사 | 산업안전, 화약류제조, 위험물, 가스, 폐기물처리 |
| | 산업보건(환경) | 50 | 기술사 | 산업위생관리, 인간공학, 대기관리, 소음진동, 화공 |
| | | 35 | 기능장 | 해당없음 |
| | | 13 | 기사 | 산업안전, 산업위생관리, 인간공학, 대기환경, 소음진동, 화공, 화학분석 |
| | | 4 | 산업기사 | 산업안전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소음진동 |
| | 건설안전(건축) | 50 | 기술사 | 건설안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기계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, 자원관리, 건축전기설비 |
| | | 35 | 기능장 | 건설기계정비,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 |
| | | 13 | 기사 | 산업안전, 건설안전, 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 |
| | | 4 | 산업기사 | 산업안전, 건설안전, 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건설기계설비, 교통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 |
| 건설안전(토목) | 50 | 기술사 | 농어업토목, 토목구조, 토질및기초, 도로및공항, 상하수도, 수자원개발, 지적, 지질및지반, 철도, 측량및지형공간정보, 토목시공, 토목품질시험, 항만및해안, 해양, 건설기계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, 자원관리, 건축전기설비 | |
| | 35 | 기능장 | 건설기계정비, 잠수 | |
| | 13 | 기사 | 산업안전, 건설안전, 토목, 건설재료시험, 지적, 응용지질, 철도토목, 측량및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해양공학, 해양자원개발, 해양환경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 | |
| | 4 | 산업기사 | 산업안전, 건설안전, 토목, 건설재료시험, 잠수, 지적, 측량및지형공간정보, 건설기계설비, 콘크리트, 교통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 | |

| 평가항목 (배점) | 채용분야 | 점수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공인어학 (25) | 공통 | 25 | <p>■ [인정 공인 영어시험] - TOEIC, TOEFL, New TEPS, G-TELP(Level2), FLEX(듣기/읽기), TOEIC-S</p> <p>[공인 외국어성적 평정기준]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채용분야</td> <td>환산식</td> </tr> <tr> <td>전문직 5급</td> <td>(TOEIC 기준 점수 ÷ 800) × 25</td> </tr> </table> <p>- 환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- TOEIC 기준 800점 이상일 경우 만점 - TOEIC을 제외한 영어시험은 각 시험기관의 공식 환산 기준에 따라 [참고자료5-2] 외국어성적 통합환산표의 TOEIC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- 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 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하며, 환산 범위 외 성적점수는 인정하지 않음(0점처리)</p> <p>[청각장애(장애정도가 심한 자) 응시자 별도 기준 적용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시험구성</th> <th>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TOEIC, TOEFL</td> <td>독해 50% + 청해 50%</td> <td>독해성적×200%</td> <td rowspan="3">청해성적 제외</td> </tr> <tr> <td>New TEPS, FLEX(듣기/읽기)</td> <td>독해 60% + 청해 40%</td> <td>독해성적×167%</td> </tr> <tr> <td>G-TELP(Level2)</td> <td>독해 66.67% + 청해 33.33%</td> <td>독해성적×1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어학성적 유효기간 인정 기준(① 또는 ②)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"> <p>① 인사혁신처 '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'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- 접수 마감일('26.3.9.) 기준 유효기간 내인 국내시험 성적으로, 접수 마감일('26.3.9.)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</p> <p>② 인사혁신처 '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'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- 접수 마감일('26.3.9.) 기준 유효기간 내인 국내시험 성적으로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'26.3.9.)까지 발표하고 해당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</p> <p>* 사이버국가고시센터, 통합채용포털 등 前 시스템 포함 ※ 자격번호 미부여, 발표예정 등으로 지원서 작성 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접수마감 시점 기준 유효하지 않은 성적(진위확인 불가)은 미인정</p> </div> | 채용분야 | 환산식 | 전문직 5급 | (TOEIC 기준 점수 ÷ 800) × 25 | 구분 | 시험구성 |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| 비고 | TOEIC, TOEFL | 독해 50% + 청해 50% | 독해성적×200% | 청해성적 제외 | New TEPS, FLEX(듣기/읽기) | 독해 60% + 청해 40% | 독해성적×167% | G-TELP(Level2) | 독해 66.67% + 청해 33.33% | 독해성적×150% |
| | | | 채용분야 | 환산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문직 5급 | (TOEIC 기준 점수 ÷ 800) × 2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시험구성 |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TOEIC, TOEFL | 독해 50% + 청해 50% | 독해성적×200% | 청해성적 제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New TEPS, FLEX(듣기/읽기) | 독해 60% + 청해 40% | 독해성적×167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G-TELP(Level2) | 독해 66.67% + 청해 33.33% | 독해성적×150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무자동화 (20) | 공통 | 15 | -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6 | -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 | - 전산회계운용사 1급, 전산세무 1급, 행정관리사 2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 | - 전산회계운용사 2급, 전산세무 2급, 행정관리사 3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한국사능력 (5) | 공통 | 5 |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3 |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 |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- 1)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직무기술자격·사무자동화는 모두 인정, 공인어학한국사능력은 최상위 1개만 인정
- 2) 1)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라 합산점수는 최대 100점이 됨
- 3)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서류는 접수 마감일('26.3.9.) 기준 유효하여야 함

【참고자료 5-2】 외국어성적 통합환산표

【NEW TEPS / TOEFL - TOEIC 환산점수】

| NEW TEPS | TOEFL | TOEIC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558-600 | 118-120 | 990 |
| 526-557 | 117-118 | 985 |
| 504-525 | 116-117 | 980 |
| 486-503 | 116 | 975 |
| 471-485 | 115 | 970 |
| 458-470 | 114-115 | 965 |
| 446-457 | 113-114 | 960 |
| 437-445 | 112-113 | 955 |
| 428-436 | 111-112 | 950 |
| 420-427 | 111 | 945 |
| 412-419 | 110-111 | 940 |
| 406-411 | 109-110 | 935 |
| 400-405 | 109 | 930 |
| 394-399 | 108 | 925 |
| 389-393 | 107-108 | 920 |
| 384-388 | 107 | 915 |
| 379-383 | 106 | 910 |
| 375-378 | 105-106 | 905 |
| 370-374 | 105 | 900 |
| 366-369 | 104 | 895 |
| 362-365 | 103-104 | 890 |
| 359-361 | 103 | 885 |
| 355-358 | 102-103 | 880 |
| 352-354 | 101-102 | 875 |
| 348-351 | 101 | 870 |
| 345-347 | 100-101 | 865 |
| 342-344 | 99-100 | 860 |
| 339-341 | 99 | 855 |
| 336-338 | 98-99 | 850 |
| 333-335 | 97-98 | 845 |
| 330-332 | 96-97 | 840 |
| 327-329 | 96 | 835 |
| 324-326 | 95-96 | 830 |
| 322-323 | 94-95 | 825 |
| 319-321 | 94 | 820 |
| 316-318 | 93-94 | 815 |
| 314-315 | 92-93 | 810 |
| 311-313 | 92 | 805 |
| 309-310 | 91 | 800 |
| 306-308 | 90-91 | 795 |
| 304-305 | 90 | 790 |
| 301-303 | 89-90 | 785 |
| 299-300 | 88-89 | 780 |
| 297-298 | 88 | 775 |
| 294-296 | 87-88 | 770 |
| 292-293 | 86-87 | 765 |
| 290-291 | 86 | 760 |
| 288-289 | 85-86 | 755 |
| 285-287 | 85 | 750 |
| 283-284 | 84-85 | 745 |
| 281-282 | 83-84 | 740 |
| 279-280 | 83 | 735 |
| 277-278 | 82-83 | 730 |
| 274-276 | 82 | 725 |
| 272-273 | 81-82 | 720 |
| 270-271 | 81 | 715 |
| 268-269 | 80-81 | 710 |
| 266-267 | 80 | 705 |
| 264-265 | 79-80 | 700 |

| NEW TEPS | TOEFL | TOEIC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262-263 | 79 | 695 |
| 260-261 | 78-79 | 690 |
| 258-259 | 78 | 685 |
| 256-257 | 78 | 680 |
| 254-255 | 77 | 675 |
| 252-253 | 77 | 670 |
| 250-251 | 76 | 665 |
| 248-249 | 76 | 660 |
| 247 | 75 | 655 |
| 245-246 | 74-75 | 650 |
| 243-244 | 74 | 645 |
| 241-242 | 73-74 | 640 |
| 239-240 | 73 | 635 |
| 237-238 | 72 | 630 |
| 236 | 71-72 | 625 |
| 234-235 | 71 | 620 |
| 232-233 | 70-71 | 615 |
| 230-231 | 69-70 | 610 |
| 229 | 69 | 605 |
| 227-228 | 68-69 | 600 |
| 225-226 | 68 | 595 |
| 224 | 67-68 | 590 |
| 222-223 | 67 | 585 |
| 220-221 | 66-67 | 580 |
| 219 | 66 | 575 |
| 217-218 | 65-66 | 570 |
| 215-216 | 65 | 565 |
| 214 | 64-65 | 560 |
| 212-213 | 64 | 555 |
| 211 | 63 | 550 |
| 209-210 | 63 | 545 |
| 208 | 62 | 540 |
| 206-207 | 61-62 | 535 |
| 204-205 | 61 | 530 |
| 203 | 60-61 | 525 |
| 201-202 | 59-60 | 520 |
| 200 | 59 | 515 |
| 198-199 | 58-59 | 510 |
| 197 | 57-58 | 505 |
| 195-196 | 56-57 | 500 |
| 194 | 55-56 | 495 |
| 193 | 55 | 490 |
| 191-192 | 54 | 485 |
| 190 | 52-53 | 480 |
| 188-189 | 52 | 475 |
| 187 | 50-51 | 470 |
| 185-186 | 49-50 | 465 |
| 184 | 49 | 460 |
| 183 | 48-49 | 455 |
| 181-182 | 47-48 | 450 |
| 180 | 47 | 445 |
| 178-179 | 46 | 440 |
| 177 | 45-46 | 435 |
| 176 | 44-45 | 430 |
| 174-175 | 44 | 425 |
| 173 | 43-44 | 420 |
| 171-172 | 42-43 | 415 |
| 170 | 41-42 | 410 |
| 169 | 41 | 405 |
| 167-168 | 40-41 | 400 |
| 166 | 39-40 | 395 |
| 164-165 | 38-39 | 390 |
| 163 | 36-37 | 385 |

| NEW TEPS | TOEFL | TOEIC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161-162 | 35-36 | 380 |
| 160 | 34-35 | 375 |
| 158-159 | 32-33 | 370 |
| 157 | 30-32 | 365 |
| 156 | 25-30 | 360 |
| 154-155 | 22-23 | 355 |
| 153 | 21 | 350 |
| 151-152 | 19-20 | 345 |
| 150 | 19 | 340 |
| 148-149 | 18-19 | 335 |
| 146-147 | 18 | 330 |
| 145 | 17 | 325 |
| 143-144 | 17 | 320 |
| 142 | - | 315 |
| 141 | - | 310 |
| 140 | - | 310 |
| 139 | - | 305 |
| 138 | - | 300 |
| 137 | - | 300 |
| 136 | - | 295 |
| 135 | - | 295 |
| 134 | - | 290 |
| 133 | - | 285 |
| 132 | - | 285 |
| 131 | - | 280 |
| 130 | - | 280 |
| 129 | - | 275 |
| 128 | - | 275 |
| 127 | - | 270 |
| 126 | - | 265 |
| 125 | - | 265 |
| 124 | - | 260 |
| 123 | - | 260 |
| 122 | - | 255 |
| 121 | - | 255 |
| 120 | - | 250 |
| 119 | - | 250 |
| 118 | - | 245 |
| 117 | - | 245 |
| 116 | - | 240 |
| 115 | - | 235 |
| 114 | - | 235 |
| 113 | - | 230 |
| 112 | - | 230 |
| 111 | - | 225 |
| 110 | - | 225 |
| 109 | - | 220 |
| 108 | - | 220 |
| 107 | - | 215 |
| 106 | - | 215 |
| 105 | - | 210 |
| 104 | - | 210 |
| 103 | - | 210 |
| 102 | - | 205 |
| 101 | - | 205 |
| 100 | - | 200 |
| 99 | - | 200 |
| 98 | - | 195 |
| 97 | - | 195 |
| 96 | - | 190 |
| 95 | - | 190 |
| 94 | - | 185 |
| 93 | - | 185 |

| NEW TEPS | TOEFL | TOEIC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92 | - | 180 |
| 91 | - | 180 |
| 90 | - | 175 |
| 89 | - | 175 |
| 88 | - | 175 |
| 87 | - | 170 |
| 86 | - | 170 |

[G-TELP - TOEIC 환산점수]

| G-TELP | TOEIC | G-TELP | TOEIC |
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99 | 969 | 74 | 786 |
| 98 | 962 | 73 | 779 |
| 97 | 954 | 72 | 771 |
| 96 | 947 | 71 | 764 |
| 95 | 940 | 70 | 757 |
| 94 | 932 | 69 | 749 |
| 93 | 925 | 68 | 742 |
| 92 | 918 | 67 | 735 |
| 91 | 910 | 66 | 720 |
| 90 | 903 | 65 | 713 |
| 89 | 896 | 64 | 706 |
| 88 | 889 | 63 | 698 |
| 87 | 881 | 62 | 691 |
| 86 | 874 | 61 | 684 |
| 85 | 867 | 60 | 676 |
| 84 | 859 | 59 | 669 |
| 83 | 852 | 58 | 662 |
| 82 | 845 | 57 | 654 |
| 81 | 837 | 56 | 647 |
| 80 | 830 | 55 | 640 |
| 79 | 823 | 54 | 632 |
| 78 | 815 | 53 | 625 |
| 77 | 808 | 52 | 618 |
| 76 | 801 | 51 | 610 |
| 75 | 793 | 50 | 603 |

[TOEIC-S - TOEIC 환산점수]

| TOEIC-S | TOEIC |
|---------|-------|
| AH | 975 |
| AM | 945 |
| AL | 895 |
| IH | 815 |
| IM3 | 750 |
| IM2 | 700 |
| IM1 | 660 |
| IL | 600 |
| NH | 480 |
| NM/NL | 360 |

[FLEX - TOEIC 환산점수]

| FLEX | TOEIC | FLEX | TOEIC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917 - 958 | 990 | 224 - 233 | 390 |
| 897 - 916 | 980 | 214 - 223 | 380 |
| 877 - 896 | 970 | 204 - 213 | 370 |
| 857 - 876 | 960 | 194 - 203 | 360 |
| 839 - 856 | 950 | 184 - 193 | 350 |
| 829 - 838 | 940 | 174 - 183 | 340 |
| 829 - 838 | 930 | 164 - 173 | 330 |
| 807 - 816 | 920 | 154 - 163 | 320 |
| 781 - 806 | 910 | 144 - 153 | 310 |
| 761 - 780 | 900 | 134 - 143 | 300 |
| 749 - 760 | 890 | 124 - 133 | 290 |
| 734 - 748 | 880 | 114 - 123 | 280 |
| 724 - 733 | 870 | 104 - 113 | 270 |
| 707 - 723 | 860 | 94 - 103 | 260 |
| 689 - 706 | 850 | 84 - 93 | 250 |
| 679 - 688 | 840 | 74 - 83 | 240 |
| 669 - 678 | 830 | 64 - 73 | 230 |
| 659 - 668 | 820 | 54 - 63 | 220 |
| 649 - 658 | 810 | 44 - 53 | 210 |
| 639 - 648 | 800 | 34 - 43 | 200 |
| 629 - 638 | 790 | 24 - 33 | 190 |
| 619 - 628 | 780 | 14 - 23 | 180 |
| 609 - 618 | 770 | 4 - 13 | 170 |
| 599 - 608 | 760 | 3 | 160 |
| 589 - 598 | 750 | | |
| 579 - 588 | 740 | | |
| 569 - 578 | 730 | | |
| 557 - 568 | 720 | | |
| 544 - 556 | 710 | | |
| 534 - 543 | 700 | | |
| 524 - 533 | 690 | | |
| 514 - 523 | 680 | | |
| 504 - 513 | 670 | | |
| 494 - 503 | 660 | | |
| 484 - 493 | 650 | | |
| 474 - 483 | 640 | | |
| 464 - 473 | 630 | | |
| 454 - 463 | 620 | | |
| 455 - 463 | 610 | | |
| 434 - 443 | 600 | | |
| 424 - 433 | 590 | | |
| 414 - 423 | 580 | | |
| 404 - 413 | 570 | | |
| 394 - 403 | 560 | | |
| 384 - 393 | 550 | | |
| 374 - 383 | 540 | | |
| 364 - 373 | 530 | | |
| 354 - 363 | 520 | | |
| 344 - 353 | 510 | | |
| 334 - 343 | 500 | | |
| 324 - 333 | 490 | | |
| 314 - 323 | 480 | | |
| 304 - 313 | 470 | | |
| 294 - 303 | 460 | | |
| 284 - 293 | 450 | | |
| 274 - 283 | 440 | | |
| 264 - 273 | 430 | | |
| 254 - 263 | 420 | | |
| 244 - 253 | 410 | | |
| 234 - 243 | 400 | | |

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기준

○ 채용비위 피해자: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

□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

① (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)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

* 예: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- 필기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
- 서류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

※ 단, 다음 채용단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에서 1회에 한하여 적용

* 예: 피해발생 인지 시점에 해당 채용단계가 종료된 경우

② (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불가능하나, 피해자 그룹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)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
* 예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 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
- 필기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
- 서류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

*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

□ 피해 구제시기: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

* 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

【참고자료 7】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

① 편의지원 제공 대상

- 2026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,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

② 편의지원 신청 방법

-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(덧붙임3)을 작성하시어 recruit@kosha.or.kr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,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

이메일 작성 시 편의제공 항목에 신청사항 기재

- ①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
-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※ [덧붙임3] 신청서 작성
- ③ (필요시) 구체적인 내용 기재
-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확인
※ [덧붙임1] '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' 확인



이메일 작성 시 증빙서류(사본) 등록

-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증빙서류(사본)를 등록



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



결과통보(문자 등)

3 신청 시기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3. 26.(목)까지 장애편의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

4 신청 시 유의사항

- [덧붙임1]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, [덧붙임1]의 편의 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(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.
-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이메일 내용에 ①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([덧붙임2] 의사진단서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.
 - ※ 해당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-[의료정보]-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.

덧붙임1

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| 편의제공 내용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필기시험 | 면접시험 | 증빙서류 |
| 지체 장애 | 공통 | 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고사장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| ·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|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|
| | 중증장애인 | <상지 한정> | | - |
| | 경증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 | | 의사진단서 (원본) |
| 뇌병변 장애 | 공통 | 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고사장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| ·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|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|
| | 중증장애인 | | | - |
| | 경증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 | ·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| 의사진단서 (원본) |
| 시각 장애 | 공통 | 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·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확대문제지 제공 |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|
| | 중증장애인 | | | - |
| | 경증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 | | 의사진단서 (원본) |
| 청각 장애 | 공통 | 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| ·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|
| | 중증장애인 | | | - |
| | 경증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- | ·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| 의사진단서 (원본) |
| 언어 장애 | 공통 | - | ·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|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|
| | 중증장애인 | | | - |
| | 경증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- | ·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| 의사진단서 (원본) |
|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| 공통 | · 별도고사장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| ·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|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|
| | 중증장애인 | | | - |
| | 경증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 | ·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| 의사진단서 (원본) |
| 기타 | 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 | 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| 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| 검토 후 안내 |

※ 상이등급지는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덧붙임2

의사진단서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

□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
□ 발급일자: **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**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| 유효 진단서 발급일 |
| 2026년 3월 9일 | 2024년 3월 10일 이후 |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**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
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

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| 예시 | ※ ①~③ 반드시 기재 |
|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뇌병변 장애인 | 경증장애인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: 상지의 수위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의사소통에 일부 시간이 필요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면접시간 연장 | |
| 청각 장애인 | 중증장애인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증상: 양쪽 귀 청력 약화에 따른 청각 결손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의사소통(면접)의 어려움에 따라 수화통역사 요청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수화통역사 배치 | |

※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**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(소견서 불인정)

덧붙임3

편의지원 제공 신청서

편의지원 제공 신청서

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도 신규직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합니다.

1. 장애 유형 및 정도

| 구분 | 경증 | 중증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체장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상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하지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뇌병변장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시각장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청각장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언어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지적, 자폐성, 정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지적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폐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신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기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
2. 편의지원 제공 신청항목(중복가능)

| 구분 | 필기전형 | | | | | | 면접전형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확대 문제지 | 별도 고사장 | 수화 통역사 | 보조공학기기 | 시험시간 연장 | 답안지 대필 | 장애사전고지 | 전담도우미 | 확대 문제지 | 수화 통역사 | 보조공학기기 | 면접시간 연장 |
| 지체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|
| 뇌병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시각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
| 청각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언어 | 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지적, 자폐성, 정신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| | |
| 기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
3. 편의지원 제공 사유 : _____

신청인
성명 : (서명)
생월일 :
연락처 :

※ 첨부 : 장애인증명서(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) 1부, (해당자) 의사진단서 1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3】 임용포기 확인서

임용포기 확인서

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()년도 신규
직원 채용 합격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을
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분야:

응시번호:

성 명: 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4】 임용동의 확인서

임용동의 확인서

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()년도 신규
직원 채용 예비합격자로서 추가합격 임용에 다음과 같이 동의
합니다.

- 임용예정일(년 월 일)에 맞춰 정상근무를 시작할 수
있도록 해당 근무지에 도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용이
취소되고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사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을
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분야:

응시번호:

성 명:

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